

2019 한국FP학회 · 한국FPSB 추계 공동정책세미나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제도의 개선 방안”

| 일시 | 2019년 10월 31일(수) 오후 1:30~4:30

| 장소 |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 701호

| 주최 | 한국FP학회  FPSB KOREA

| 후원 | 매일경제신문, 자본시장연구원

한국FP
Korean Academic Society of
Financial Planning 학회

 FPSB KOREA

| 행사일정 |

1:30-2:00 등록

2:00-2:10 개회식

사회 김성태 (동의대 교수)

개회사 박광수 (동의대 교수, 한국FP학회장)

환영사 김용환 (한국FPSB 회장)

축사 윤계섭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FP학회초대회장)

2:10-3:10 발표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현황과 비교분석

조혜진 (인천대 교수), 김민정 (충북대 교수)

해외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이진호 (한남대 교수), 백강 (한밭대 교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연계 및 발전방안

김도성 (서강대 교수)

3:10-3:30 휴식

3:30-4:30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송수영 (중앙대 교수)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윤창섭 (삼성금융연수원 센터장)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최철 (숙명여대 교수)

4:30 폐회

금융자문업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재무설계전문자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김도성(서강대) 김민정(충북대) 백 강(한밭대) 이진호(한남대) 조혜진(인천대)

한국fp
Korean Academic Society of
Financial Planning 학회

Contents

1

서론_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분석

3

해외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금융전문인력 자격간의 연계와 재무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4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연계 및 발전방안

한국fp
Korean Academic Society of
Financial Planning 학회

Part. 0

서론

연구의 목적

금융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

- 4차산업혁명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환경 급속 변화, 신뢰할수있는 전문금융인력 양성은 국가경쟁력과 연결
- But, 다양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간 연계 미비, 금융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한 부담 가중, 사회적 비용 가중

가계재무건전성 확보 위해 재무설계 전문자격양성을 통한 전문적 재무설계서비스 활성화 필요

- 한국 가계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한국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 이슈
-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전문가의 가계/ 개인재무설계 (Personal Financial Planning) 서비스 제공 중요
- “금융소비자 보호기본법”에 포함된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자문 또한 개인재무설계의 중요 분야

금융자문업의 선진화와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재무설계 전문인력자격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

연구의 내용

국내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파악,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 파악

해외

해외 선진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검토하여 금융전문인력 자격
간의 연계 및 재무설계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 등 파악 후, 국내 금융
자격제도 연계 및 재무설계사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결론 시사점

선진국 사례의 국내 자격제도 적용 방안과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
격제도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발전방향, 그리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함.

Part. I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현황과 비교분석

금융전문인력의 정의 : **광의**의 개념

- “금융에 대한 전문적 이론지식을 갖추고 특정 분야의 실무경험을 통해 해당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2005년 6월 3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진행된 금융허브회의자료)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조사”에 **자격증** 부분 포함
 - 구분 : 국가자격, 민간자격(국가공인/등록), 국제통용자격
 - 국가자격** : 공인회계사 외 5개 자격증 (총 6개)
 - 민간자격 - 국가공인** : 자산관리사 외 6개 자격증 (총 7개)
 - 민간자격 - 비공인(등록)** : 법정자격, 일반등록자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8-1조의 “주요직무 중 사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와 “주요직무 중 사자” 및 영 제56조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따른 금융인력 자격
 - 국제통용자격** : 미국공인회계사 외 2개 (총 3개, 기타 별도)

「2018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에 포함된 금융자격

구분		자격증명		
국가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민간 자격	국가 공인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 신용위험관리사, 신용관리사, 외환전문역1종/2종		
	비공인 (등록)	법 정 자 격	투자권유 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상담관리인력
			투자운용인력	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조사분석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채권평가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보험판매인력	변액보험판매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은행텔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언더라이터, 재무설계사(AFPK) , 종합자산관리사(IFP) , 기타	
	국제통용자격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기타 재무설계사(CFP)		

*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2019), 2018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 p.14.를 수정

*** 국제통용자격증에 CFP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금융전문인력의 정의 : 협의의 개념

- 본 연구는 금융자문업의 선진화와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와 연계
를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금융전문인력은 **금융자문인력**에 한정함
 - 가계(개인/소비자)를 대상
 -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상품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재무설계 전문인력

- 가계(개인)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종합적인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
인력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 관련 법령(법안)의 자격에 따른
금융인력

금융자문인력 자격요건 규정 현황 1

자본시장법상에서의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요건

-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 인정(제6조)
 - 투자자문업자의 등록 요건
 - 법인으로 진입 자격 제한
 - 최소자본금 1억원이며, 상품별로 1인의 자문인력 확보
 - 펀드, 예금, RP(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자문업무 범위가 제한
 - 대리 허용 금지 (보험대리점에서 소속 재무설계사를 통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방지)
- 이해상충의 방지
 - Whole of Markets 도입: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상품을 비교, 자문하도록 규제
 - 공개 의무: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판매업 경영 허용

: 현행 개별 금융법상 규정된 판매업만을 경영 대상으로 허용,

실제로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보험상품 판매만 가능

-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펀드판매 금지
- 은행이 아닌 자는 예금판매 금지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판매 가능

-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2017)을 통해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 독립투자자문업(IFA) 자격 요건

- 자문보수의 수취방식 : 고객으로부터만 자문의 대가 수취
- 판매자와의 계열 및 경영관계 : 자문대상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업 경영 금지
- 취급상품의 범위 : 특정 금융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에 국한한 자문서비스 제공 금지

금융자문인력 자격요건 규정 현황 2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의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요건

- 금융상품자문업의 정의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구매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법 통과시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



➔ 금융상품자문은 모든 상품유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권별 자격시험 제도는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금융상품자문업 신설의 의의

- 보험대리인 등의 자문행위를 법 체계 내에 포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
 - 금융상품자문업자에 선관 의무 규정
- } **금융상품판매업자보다 훨씬 위중한 의무를 부여**
- 독립적인 자문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지위 확보
 - 자문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 구비
 - 투자자문의 영역을 제외한 자문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ex. “재무설계”와 같은 금융상품과 무관한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금융자문인력 자격요건 규정 현황 3

해외 금융자문업 선진국의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요건



- 미국의 등록투자자문인력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 북미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시리즈 65 시험 (Investment Adviser Competency Exam)**에 합격해야 함
 - 시리즈 65 시험 이외에도 대체적인 자격 요건이 가능함
 - 시리즈 7 시험과 시리즈 66 시험
 - 다음의 자격인증 중 하나
 - Certified Financial PlannerT, CFP®
 -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 Personal Financial Specialist, PFS
 - Chartered Investment Counselor (CIC)



- 영국의 금융자문인력 (Financial Adviser)
 - **FSP (Financial Skills Partnership)**에서 금융 관련 자격제도 관리
 - 여러 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
 - 인증프로그램을 수료 후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짐
 - 금융자문인력 자격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
 - QCT (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레벨 4
 - SCQF (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 Framework) 레벨 8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 규정 현황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2007.12)
 - 금융중심지 :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
-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내에 금융전문인력 양성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제10조(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련 내용 명시
 -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 수립 및 추진
 -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 금융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조항 포함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중심
 - 금융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포함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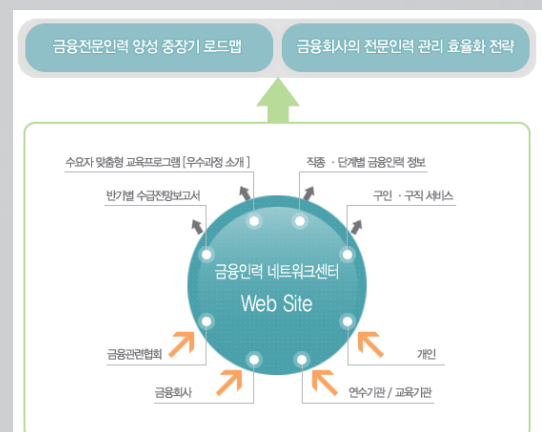
➔ 금융전문인력 양성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 규정 현황 5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에 제시된 금융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계획

- 2005년 6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진행된 금융허브회의 자료에 포함
 - 금융허브 달성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 전략적 양성 계획
- 금융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의 주요내용
 - 금융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 시행
 - **금융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연수 수요의 파악과 이의 충족을 위한 연수기관 간 공동 협조(연수과정 개발 등)**
 - 금융전문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DB 구축 및 사이트 운영, 이 사이트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 및 공급을 중재하는 센터로서의 기능 부여
 - **금융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 경력개발경로(career path) 및 교육연수의 모범사례 발굴 및 제시**
 - 금융연수기관의 역량강화 방안 수립 및 시행

-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 (2006)
 -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 목적
 - 한국금융연구원 운영
 - 금융인력정보 : 금융인력기초통계조사 실시
 - 금융교육정보 :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정보 수집 및 관리, 국내 연수기관과 대학원, 국외연수 등의 정보를 제공
 - 금융산업정보, 금융동향 등
 - **자격증정보** :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에 대한 정보 (개요, 취득절차, 일정, 응시자격 등) 제시
→ 2009년 이후 업데이트 미비
 - e-mail 서비스 : 국내외 교육연수, 구인정보 등



출처: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
(https://www.fnet.or.kr/scripts/center/center_business.asp)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현황 및 비교분석

•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국제공인 자격증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기술 자격	국가전문 자격	국가공인	등록	사업내자격
재무설계사(CFP)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미국공인회계사(AICPA)	-	5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10개 자산관리사 신용상담사 신용관리사 등	117개 AFPK IFP 금융투자분석사 투자권유대행인 등	2개 CSA 건강보험정보분석사

* Q-Net(<http://www.q-net.org/qf005do?d=cf00501&gSite=Q&gId=>) 및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jork/indexMain.do>)를 통해 금융관련 자격증을 검색

비교분석 대상 자격증

• 가계(개인) 대상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전문인력 자격증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증
가계(개인)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종합적인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법령(법안)의 자격에 따른 금융인력
-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 재무설계사(AFPK) - 자산관리사(FP) - 종합자산관리사(IFP)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 기본적인 금융지식, 증권, 보험, 투자, 상속, 은퇴,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시험과목, 응시자격, 합격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

1. 시험과목

- 상속설계, 은퇴설계를 독립 교과목으로 다루는 자격은 CFP와 AFPK만 해당
→ 고령화시대 체계적 대비를 위한 지향할 부분
- 직업윤리를 과목에 명시하는 자격증은 CFP와 AFPK만 해당
→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 금융상품/서비스 자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향할 부분
- 지식 문제 이외에 사례형 평가 포함한 자격은 CFP가 유일
→ 현장 실무 역량 중요성 반영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시험과목]

국제통용자격		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등록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한국 FPSB				한국금융연수원	손해/생명 보험협회 (공동관리기관)
지식형	재무설계원론	모듈1	재무설계개론	자산관리 기본지식	파이낸셜플래닝
	재무설계 직업윤리		재무설계 직업윤리		
	부동산설계		부동산설계	비금융자산 투자설계	부동산 운용설계
	상속설계		상속설계		
	은퇴설계	은퇴설계	보험 및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모듈2	투자설계	금융자산 투자설계	금융자산 운용설계
	세금설계		세금설계	세무설계	세무설계
사례형	단일사례				
	복합사례				
	종합사례				

2. 응시자격

- FP, IFP는 별도의 제한조건이 없음
- CFP, AFPK 는 자격관리기관(한국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정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수료)

[CFP, AFPK 시험응시를 위한 사전 교육 요건 및 면제 자격]

	CFP		AFPK	
사전자격	• AFPK 자격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교육 요건	• 집합교육 최소 200시간 • 원격교육 220시간		• 집합교육 최소 80시간 • 원격교육 최소 88시간	
교육 면제 자격	전체	공인회계사(등록), 변호사(등록), 세무무사(등록), 경영학/경제학/재무설계학 박사	전체	공인회계사(합격), 변호사(합격), 세무사(합격),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경영학/경제학/재무설계학 석사
	부분	-	모듈2	FP, IFP 투자자산운용사
			보험설계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투자설계	국제투자분석사, 운용전문인력,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부동산설계	공인중개사

3. 합격기준 및 합격유효기간

- 합격 구분 : 전체 합격, 부분 합격
- 합격기준 : (전체합격) 전체 평균 기준(60~70%) & 과목별 과락 기준(40% 이상 획득) 적용
 - CFP, AFPK의 합격기준이 가장 높음(70%)
- 합격유효기간
 - 부분 합격의 경우 유효한 인정 기간 내(연이은 3~4회 시험)에 나머지 부분 합격을 해야 전체 합격으로 인정
 - CFP, AFPK의 경우 시험합격 후 별도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체합격의 경우에도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음 (합격월로부터 3년 이내)
 - 연중 자격시험 횟수를 고려할 때 IFP의 부분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음 (AFPK 연 3회, FP 연 3회, IFP 연 1회)
 - 특히 CFP의 경우 시험합격 후 인증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험과목 간 균형있는 합격기준(전체 평균 및 과목별 과락 적용) 필요

→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변화 감지 등을 위해 적절한 합격 유효기간 적용 필요

→ 합격과 인증의 분리 운영을 통한 자격증 체계 및 공신력 확대

[합격기준 및 합격유효기간]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합격기준	전체합격	- 전체 평균 7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 전체 평균 7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1부, 2부 모두 평균 6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파트1, 2 모두 합격
	부분합격	- 지식형 : 평균 70% 이상 - 과목별 40% 이상 - 사례형 : 평균 70% 이상	- 모듈별 평균 70% 이상 - 해당 과목 40% 이상	1부 또는 2부만 합격 시	- 과목별 40% 이상 - 파트별 평균 60% 이상
합격유효 기간	전체합격	합격월로부터 5년 이내에 실무경험 인증 필요	합격월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	-	-
	부분합격	부분 합격 후 1년 이내 (연이은 2회 시험)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4회 시험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3회 시험(년수 제한 2년)	파트별 부분합격 후 연속되는 3회의 시험응시 까지

4. 자격유효기간(인증유지조건)

- 자격 취득 후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음
- 유효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교육 또는 보수교육 실시**, CFP가 가장 엄격
 - ➔ 변화하는 금융시장과 제도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성 유지
 - ➔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공신력 있는 운영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CFP의 경우, 합격월로부터 1년 경과 후 인증신청할 경우 누적된 계속교육학점 충족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유효기간	5년	2년	3년	2년
인증유지조건	- 유효기간 내 계속교육학점 이수 - 2년마다 자격인증 갱신 필요 (계속교육 30학점)	계속교육학점 이수	보수교육	보수교육 이수
기타	실무경험 요건 : 합격월을 기준으로 과거 10년~합격 후 5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험 요건 충족 시 인증	- 합격자는 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 유효기간 내에 인증 신청 가능 - 합격 후 결과월에 따른 계속교육학점 요건 충족한 후 인증 신청 가능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 자격 일시정지, 이수 후 자격 부활	시험 합격 후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 이수 하여야 함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증

- 금융자문인력 자격 중 법정자격에 해당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분석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음)
 - 투자권유자문인력 : 증권, 펀드, 파생상품
 - 투자권유대행인 : 증권, 펀드

1. 기본사항

- 자격등급 : 5개 자격 모두 민간자격 등록 자격증
- 관리기관 : 5개 모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관리
- 자격별 주요직무
 -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펀드/파생상품)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펀드/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하는 자격
 - 투자권유대행인(증권/펀드)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증권/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의 자격

한국fp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증

2. 시험과목

- 3~4개의 과목으로 구성
- 해당 상품의 기본지식 및 직무윤리와 투자자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직무윤리 과목이 포함됨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펀드일반”에 직무윤리, 투자자분쟁예방 내용이 포함
- 투자권유대행인(펀드, 증권)의 경우 “투자권유” 과목에 관련 법규, 영업실무, 직무윤리, 투자자분쟁예방, 투자권유 사례분석 등이 포함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대행인	
증권	펀드	파생상품	펀드	증권
증권분석 증권시장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법규 및 세제	펀드일반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 I 파생상품 II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 파생상품법규	펀드 투자 투자 권유 부동산펀드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증권투자 투자권유

한국fp
한국금융투자협회

3. 응시자격

-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자/펀드/파생상품)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이어야 함
- 투자권유대행인(증권/펀드)의 경우 특별한 응시자격 없음

4. 합격기준 및 합격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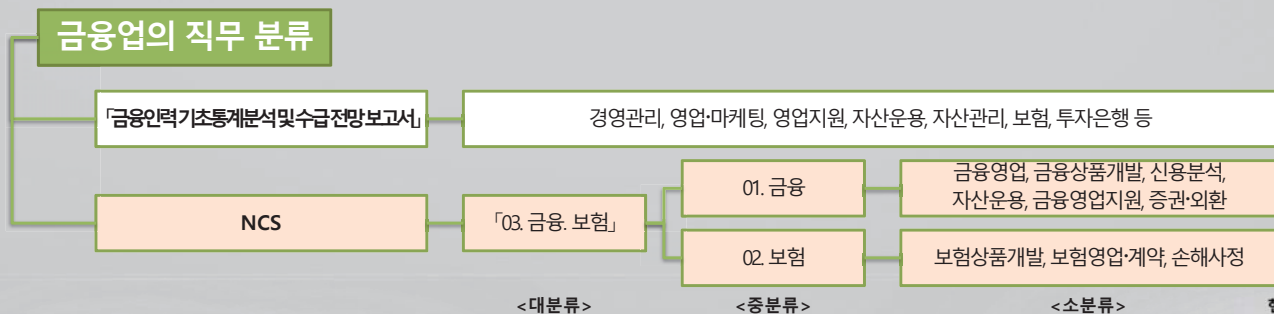
- 투자권유자문인력 : 전체평균 70% 이상, 모든 과목 50% 이상 과락 적용
- 투자권유대행인 : 전체평균 60% 이상, 모든 과목 50% 이상 과락 적용

5. 자격유지조건

-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 전문인력 등록 전 사전교육(등록교육) 필요
- 등록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필요
 - 투자상담관리인력 및 자본금 1억 투자자문사의 자문인력은 매년 이수
- 전문인력 자격요건 충족일, 보수교육 이수일이 5년 경과한 경우 자격별 전문성강화교육 이수 필요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금융전문인력은 금융에 대한 전문적 이론 지식은 물론 실무 경험을 통해 금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역량을 갖추어야 함
 - 금융전문인력의 역량 평가(판단) : 해당 자격증 보유 여부, 해당 직무 NCS의 KSA 부합 정도 등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Knowledge)·기술(Skill)·태도(Attitudes)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하여 표준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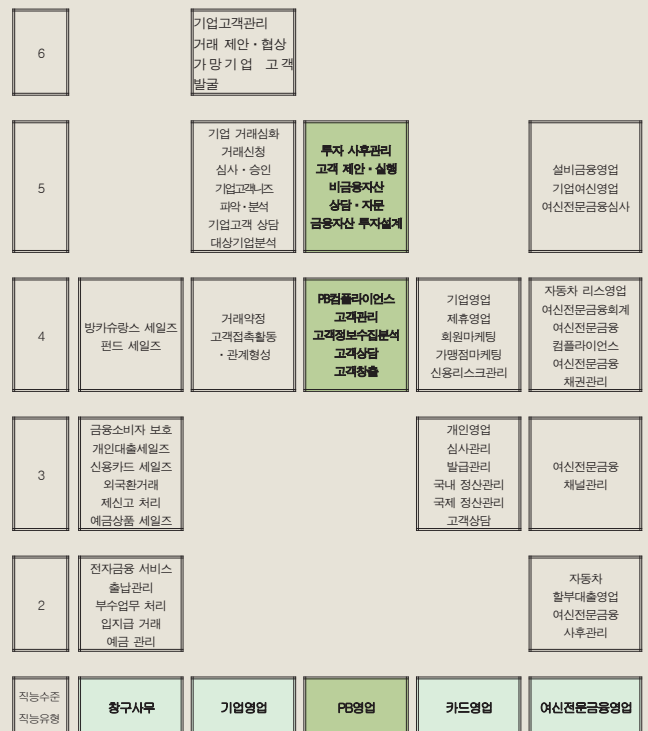


NCS의 금융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3.금융·보험	01. 금융	01. 금융영업	01. 창구사무 04. 카드영업 02. 기업영업 05. 여신전문금융영업 03. PB영업
		02. 금융상품개발	01. 여수신상품개발 03. 연금상품개발 02. 투자상품개발 04. 카드상품개발
		03. 신용분석	01. 개인신용분석 02. 기업신용분석 03. 여신심사
		04. 자산운용	01. 펀드운용 04. 대체투자 02. 주식·채권운용 05. 신탁자산관리 03. 파생상품운용
		05. 금융영업지원	01. 결제 02. 채권추심 03. 리스크관리
		06. 증권·외환	01. 증권거래업무 04. 증권상장업무 06. 무역금융업무 02. 외환·파생업무 05.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03. 인수업무
	02. 보험	01. 보험상품개발	01. 보험동향분석 02. 보험상품개발 03. 보험계리
		02. 보험영업·계약	01. 보험모집 03. 보험계약·보전 02. 보험계약심사 04. 위험관리
		03. 손해사정	01. 재물손해사정 02. 차량손해사정 03. 신체손해사정

금융영업 (소분류)

- “01. 금융영업”에 대한 『NCS 활용패키지』 상의 관련 자격현황
 - 국가자격(2종) :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공인민간자격(6종) : 외화전문역, 신용위험분석, 자산관리사, 국제금융역, 여신심사역, 신용분석사
 - 등록민간자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01. 금융영업”에 제시된 있는 경력개발경로 (우측)
 - “PB영업”은 직능수준 4~5수준
 - 투자사후관리 등 9개의 항목들은 “PB영업” 직무를 위해 설정된 능력단위



금융영업 – PB영업 (세분류)

• “PB영업”에 대한 직무정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를 가진 고객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니즈를 파악하여 니즈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 구성 : 9개 능력단위, 31개 능력단위요소

➔ “종합재무설계” 직무와 유사하게 구성됨

• 직무기술서 상 관련자격사항

- 직무기술서 : 각 능력단위별로 해당 직무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 주요 책임, 요구받는 역할, 직무 수행 요건 등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
- 모든 능력단위에 자산관리사(CFP), 자산관리사(FP)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확한 명칭사용되지 않음
 - CFP : 자산관리사 →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금융자산 투자설계, 비금융자산 상담자문, 고객제안실행, 투자사후관리, 고객관리 능력단위에 투자자산운용사, 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증 포함

PB영업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관련자격사항

능력단위	수준	능력단위요소	직무기술서 상 관련자격사항
고객창출	4	대상고객 선정하기 / 분석하기 / 접근하기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국제금융역(CIFS), 외환전문역1/2(CFES)
고객상담	4	상담 준비하기 / 실행하기 / 사후관리하기	
고객정보수집·분석	4	재무목표 파악하기, 투자성향 파악하기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수집·분석하기	
금융자산 투자설계	5	국내외 경제환경·금융시장 분석하기 자산배분전략 수립하기 금융상품 분석하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비금융자산 상담·자문	5	부동산 / 세무설계/ 생애설계/ 실물자산 상담·자문하기	
고객제안·실행	5	제안서 작성하기 / 설명하기 / 조정하기	
투자 사후관리	5	투자성과 점검하기 / 보고하기 / 재조정하기	
고객관리	4	고객정보 갱신하기, 고객불편사항 확인하기 고객관계 강화하기	
PB컴플라이언스	4	고객정보 보호하기, 불완전판매 방지하기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하기	

*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https://www.ncs.go.kr/index.do>), PB영업 NCS 활용페이지

소결: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문제점

- 유사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간 공존, 연계성·호환성 부족
 - 유사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를 기관별 시행
 - 자격제도 간 업무 교류 부족, 호환 불가능
 - 분야별 자격증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 일시적, 단편적 자격시험제도 많음 - 관리 미흡
-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 부족
 - 종합재무설계 관련 자격증의 국가기술자격 등록 적극 추진
 - 엄격한 자격등록 요건 적용: 계속교육, 보수교육
 - 교육 과정 개발 및 외부 교육기관의 계속(보수)교육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 이론 지식 이외에 실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식 적용 추진
-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NCS 상에 금융자문업 미포함
 - 재무설계와 유사한 PB영업 포함

→ 전문분야별 자격증 관리 및 자격
증간 상호 업무호환/연계 관리
추진 필요

→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컨트
롤타워 필요

→ 종합적인 금융자문서비스에 해당
하는 재무설계 직무의 NCS 포함
추진 필요

한국fp
Korean Financial Planning Society of
Financial Planning 학회

Part. II

해외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미국 - 투자자문업 현황

- 미국은 투자자문업자(IA: investment adviser)와 브로커-딜러(BD: broker-dealer)가 소매고객에게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
- 판매기능과 투자자문의 분리된 기능별로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
- 업무 영역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업자(RIA)와 브로커-딜러(BD)는 상이한 연방 규정(federal regulation)이 적용

구분	Investment Adviser (RIA)	Broker-Dealer (BD)	Bank
성격	자문·일임·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은행
등록	SEC, 주 증권당국	SEC, FINRA	(국법은행) OCC (주법은행) 주정부
법령	Investment Advisers Act	Securities Exchange Act	National Bank Act 등
범위	자문, 일임, 집합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매매·중개	펀드 판매 등 (대부분 Broker-dealer와 계약을 통해 수행)

미국 - 투자자문업자 등록

- 브로커-딜러(BD)는 FINRA의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브로커-딜러의 관련인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투자자문업자(RIA)는 관리대상 자산 규모가 2,500만 달러 이상이면 SEC에, 그 이하이면 주 증권당국에 등록해야 함
 - 관리자산이 2,5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SEC 등록을 금지(Advisers Act Sec 203A)
 - 2011.7.21일, 도드-프랭크법에서 관리자산 한도를 1억 달러로 상향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의 IAR(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는 주 감독당국의 등록, 인가, 자격요건의 적용을 받음

미국 - 투자자문인력 자격요건

-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FINRA가 제공하는 자격증, 연수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판매인력으로 활동이 금지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or Act)에 의한 투자자문업자(IA)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등록투자자문인력(RIA)이 되기 위해서는 북미증권업협회(NASAA)에서 주관하는 Series 65 시험(Investment Adviser Competency Exam)에 합격해야 함
 - Series 65 시험에서는 투자자문과 관련된 경제학, 수학, 통계학, 투자론, 마케팅, 법, 규정, 윤리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 - 투자자문인력 자격요건(cont.)

- 그러나, Series 65 시험 이외에도 대체적인 자격요건이 가능함(NASAA Model Rule USA 2002 412(e)-1)
 - Series 7 시험(NASD General Securities Representative Examination)
 - Series 66 시험(NASAA Uniform Combined State Law Examination)
 - 다음의 자격 인증 중 하나를 취득한 경우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 Personal Financial Specialist, PFS
 - Chartered Investment Counselor, CIC

미국 - Series 65 Exam

- Uniform Investment Adviser Law Examination으로 알려진 Series 65는 미국에서 투자자문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자격시험을 말함
- 관련 법률, 규제 환경, 윤리뿐만 아니라 퇴직설계, 포트폴리오 관리, 신의성실의무 등 투자자문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 NASAA에서 주관하며 FINRA의 관리를 받음

항목	문항수	비중	관련분야
경제지표 및 기업정보 (Economic Factors and Business Information)	19	14%	경제학, 수학, 통계학, 투자론
투자 상품의 특성 (Investment Vehicle Characteristics)	31	24%	투자론
고객 투자 자문 (Client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Strategies)	40	31%	마케팅, 투자론
관련 법률, 규정, 가이드라인 등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cluding Prohibition on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40	31%	법, 규정, 윤리

한국fp
한국투자증권협회

미국 - Series 65 Exam 출제 내용

항목	문항수	비중
경제지표 및 기업정보(Economic Factors and Business Information)	19	14%
A. 기본 경제 개념, B. 재무보고, C. 정량적인 분석법, D. 리스크 종류		
투자 상품의 특성(Investment Vehicle Characteristics)	31	24%
A.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종류 및 특성, B. 고정이자증권의 종류 및 특성, C. 가치평가 방법, D. 주식의 종류 및 특성, E. 주식 가치평가, F. 간접투자상품 종류 및 특성, G. 간접투자상품 가치평가, H. 파생상품 종류 및 특성 I. 대체투자상품, J. 보험상품		
고객 투자 자문(Client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Strategies)	40	31%
A. 고객 종류, B. 고객 특성, C. 자본시장이론, D.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E. 포트폴리오 관리 기술, F. 세금 고려, G. 은퇴 설계, H. 퇴직연금 관련 이슈, I. 특별 계좌, J. 단기매매증권, K. 성과 평가		
관련 법률, 규정, 가이드라인 등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cluding Prohibition on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40	31%
A. 주/연방정부 관련 법률 및 규정, B. 윤리, 신의성실의무		

한국fp
한국투자증권협회

미국 - CFP

- Financial Planning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 CFP Board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윤리, 교육, 경험, 시험의 4가지 기본적인 자격인증요건(4E's)을 충족하는 전문 인재를 선발하여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

<CFP 출제 내용 및 범위>

8 Principal Knowledge Topic Categories		8 Major Domains
• Professional Conduct and Regulation	7%	Establishing and Defining the Client-Planner Relationship
• General Principles of Financial Planning	17%	Gathering Information Necessary to Fulfill the Engagement
• Education Planning	6%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lient's Current Financial Status
•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Planning	12%	Developing the Recommendation(s)
• Investment Planning	17%	Communicating the Recommendation(s)
• Tax Planning	12%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 Retirement Savings and Income Planning	17%	Monitoring the Recommendation(s)
• Estate Planning	12%	Practicing within Professional and Regulatory Standards

한국FP
한국회

미국 - CFP Exam

	Foundation Level ¹⁵	Level 1	Level 2	
Duration	3 hours	3 hours	3 hours	
Number of multiple-choice examination questions (MCQs)	90 – 100 MCQs	75 – 85 MCQs	65 – 75 MCQs (about 40% are standalone MCQs and about 60% are case-related questions based on 2 to 3 cases)	
Subject Area	Percentage (%) in Examination	Percentage (%) in Examination	Standalone MCQs	Case-related MCQs
A. Financial Planning Principles	27%	--	18%	60% (Integrated topics of financial planning)
B. Financial Management	23%	--	10%	
C. Retirement Planning	10%	--	12%	
D. Investment Planning/Asset Management	20%	31%	--	
E. Insurance Planning/Risk Management	20%	31%	--	
F. Tax Planning	---	20%	--	
G. Estate Planning	---	18%	--	

Source: CFP Examination Handbook, IFPHK

한국FP
한국회

영국 - 투자자문업 현황

- 은행, 증권사,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등 다양한 유형의 플레이어가 차별화된 사업모델(고객군·서비스)로 자산관리시장에서 경쟁
 - 은행 PB, 패밀리오피스 등은 부유층·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중부유층에 대해서는 IFA의 경우 자문 기반 중개, 증권사와 온라인플랫폼은 단순중개에 초점을 두고 공략 중
- 취급상품의 범위와 전속 여부에 따라 독립자문업자(IFA)와 한정자문업자(restricted advisers)로 구분되며, 인가 자격요건 등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자문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직접 인가를 받은(authorized) 인가업자(principal firms)와, 인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가업자의 인가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정대리인(AR: appointed representative)으로 구분
 - 지정대리인(AR)은 감독당국의 규제감독을 받지 않으며, 지정대리인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인가업자(principal)가 부담

영국 - 투자자문업자 자격요건

- 투자자문업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부터 인가를 취득함
 - 투자자문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자격학점제 기준 최저 QCF 레벨 4 자격을 취득해야 함
 - 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RDR 시행 이전 자격요건(QCF 레벨3, 자기자본 1만 파운드) 대비 상향
 - QCF(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 국가자격학점제도로써 등록단계부터 레벨 8까지 총 9단계로 구성됨. 이 중 레벨 4는 학사 1년 수료에 해당함
- FSP(Financial Skills Partnership)에서 금융관련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음
 - 영국의 전 금융업계(은행, 주택금융조합, 보험, 보험중개인, IFA, 증권, 투자관리, 신용 및 리스, 연금 등)를 대표하는 금융업자 및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금융관련 자격을 결정하고 있음
 - 여러 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프로그램을 수료 후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짐

영국 - 투자자문업자 자격요건(cont.)

- 금융자문인력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QCT (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레벨 4나 SCQF (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 Framework) 레벨 8을 요구
 - QCT 레벨 4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다음과 같음
 - 금융서비스 규제와 윤리, 투자원칙과 위험, 개인세금, 연금 및 노후설계, 보장성 상품, 재무설계 실무
 - 부동산설계와 관련된 차이점을 제외하면 CFP 내용과 유사

<영국 QCT 레벨 4 인증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기관
Diploma in Regulated Financial Planning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 (CII)
Diploma in Investment Planning	Chartered Banker Institute
Diploma for Financial Advisers	ifs School of Finance
Investment Advice Diploma	Chartered Institute for Securities & Investment (CISI)
Diploma in Professional Financial Advice	SQA/Calibrand

한국fp
한국투자자문학회

영국 - QCF

-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따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9개(이후 비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48개국으로 늘어남) 유럽 국가들이 각 나라의 고등교육제도 간 비교가능성을 담보하는 교육 수준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에 도입한 제도
- 영국에서 자격체계(qualification framework)의 아이디어는 1997년에 가장 먼저 제안되었고, 그 뒤 2008년까지는 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QCF (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가 쓰이다가 지금은 RQF (Regulated Quality Framework)로 대체
 - 영국 CII(Chartered insurance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advanced diploma in financial planning”과 IFP(institute of financial planning)의 CFP program은 QCF 레벨 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정

한국fp
한국투자자문학회

영국 - QCF levels

	UNIVERSITY		
LEVEL 8	Doctorate PhD		
LEVEL 7	Master's Degree MA, MSc, MPhil		
LEVEL 6	University Degree BA, BSc		
LEVEL 5			
LEVEL 4			
	Foundation Degree FdA, FdSc	HND	
		HNC	
LEVEL 3	A-Level A2 AS	L3 Extended Diploma (National Diploma)	L3 Diploma (National Certificate)
LEVEL 2	GCSE Grades A-C	L2 Diploma (1st Diploma)	
LEVEL 1	GCSE Grades D-G	L1 Diploma (Foundation)	
ENTRY LEVEL 3	Key Stage 3	E3 Diploma (Foundation)	
	SCHOOL / 6TH FORM	F.E. COLLEGE	

<RQF 레벨 프레임워크>

RQF level	Level criteria 레벨내용
level 8	고차원적인 연구 가능
level 7	고등수준의 기술과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식 습득, 적용
level 6	특정 주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 습득
level 5	특정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과 지식 습득
level 4	습관적이지 않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level 3	문제해결능력이 있고 복잡한 직무범위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level 2	사실관계를 잘 알고 직무범위의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
level 1	사실관계를 아는 수준
Entry	정상적인 인간

호주 - 금융전문인력 자격

-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서 AFSL(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 자격을 부여
- Regulation Guideline 146에서 금융전문인력의 자질로 지식요건(Knowledge Requirement)와 기술요건(Skill Requirement)을 상세하게 규정
- Regulation Guideline 14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심사하여 다수의 교육기관을 공인 교육기관으로 지정
 - ASIC 교육기관 웹사이트에서 “1종, 재무설계”를 검색어로 하면 147개 교육과정이 검색되며, “2종”을 검색어로 하면 85개의 교육과정이 검색
- 외국 규제기관(영국 FSA, 뉴질랜드 FMA, 미국 FINRA, 홍콩 FSC, 싱가포르 MAS 등)에서 인정하고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호주 -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 강화

- ASIC은 2018.5.15일 금융자문업자 윤리준수계획(Compliance schemes for financial advisers) (안)을 발표
 - 금융자문업자의 직업적·윤리적·교육적 기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호주 정부가 2016년 금융자문업자에 직업 기준을 도입하는 회사법 개정안(Corporations Amendment (Professional Standards Financial Advisers) Act 2017)을 국회에 제출
 - 금융자문업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함
 - 금융자문업자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따라야 하며 준수계획(Compliance scheme)에 가입해야 함
 - 금융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자문업자(financial adviser)’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은 ‘금융자문업자 기준 및 윤리감독국’(FASEA, Financial Adviser Standards and Ethics Authority)이 담당하며 2020.1.1일부터 적용될 예정

호주 - 금융자문업자 자격요건 강화

- ASIC은 2018.11.8일 금융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
 - 호주 회사법(Corporation Act)은 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사람(AFS licensee)들이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
 - 일명 ‘조직 자격요건 의무’(Organizational competence obligation)라고 하며 기존 ‘규제 지침(RG, Regulatory Guidance) 105’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음
 - 기존 금융자문업 인가자들의 조직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 및 훈련기준을 만족하는 한 명 이상의 책임자가 자문상담사(adviser)들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
 - 책임자는 금융자문업자 시험(financial adviser exam)을 통과하고 학사 학위 이상과 매년 자격 갱신(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함
 - 2020.1월부터 적용되는 FASEA의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하며 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준수제도(compliance scheme)를 적용 받음
 - ASIC은 2018.12.6일까지 강화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2019.3월 강화된 규제지침을 발표

일본 - 자격제도 체계

-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자격, 공적자격, 민간자격으로 구분
 - 국가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분야에 국한하여 국가만이 그 자격을 부여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
 - 공적자격은 민간이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격으로 사내검정 인정제도 등이 있음
 - (사내검정 인정제도)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능력의 개발 및 향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단체 혹은 그 연합 단체가 그 사업에 관련하는 직종에 대해 해당 사업주 등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검정하고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
 - 민간자격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의 관여 없이 업계 단체, 임의 단체, 학교 등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로써,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자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격신설 및 폐지도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일본 - 자격제도 특징

- 기능과 기술을 구분하여 자격제도를 운영
- 정부주도형으로 자격제도를 운영
- 내부 노동시장의 발달로 기업 내 훈련을 통해 인력양성을 해왔기 때문에 민간전문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내자격이 비교적 활성화
- 기존 자격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단일화된 평가기준으로 직업능력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나, 기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제도와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음
- 일본 자격제도의 개선 및 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해 응시자격이나 시험내용을 변경하면서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노력

일본 - 금융관련 기능검정제도

- 기능검정제도에 따른 국가자격 중 금융관련 자격은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와 금융창구서비스(Financial Services)의 두 개 직종만 해당
 - 재무설계 기능검정은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에 따라 2002년부터 후생노동성의 민간지정시험기관인 일본FP협회와 금융재정사정연구회에서 실시
 - 재무설계사는 상담을 통해 고객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고객의 라이프 플랜이나 요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언하는 자산 상담 관련 전문가를 말함
 - 재무설계기능사는 업무독점자격이 아니라 명칭독점자격으로 재무설계기능사가 아니더라도 재무설계를 할 수 있지만 재무설계기능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재무설계기능사는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이 있고 각 등급별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음
 - 금융창구서비스 기능검정은 금융 기관의 창구 업무 등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를 검정하며 후생노동성의 민간지정시험기관인 금융재정사정연구회에서 실시
 - 금융창구서비스 기능사는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이 있고 각 등급별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음

일본 - AFP vs. CFP

- 일본에는 재무설계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인 재무설계 기능사 이외에 일본FP협회에서 주관하는 AFP자격과 CFP자격이 있음
 - AFP자격은 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재무설계와 관련된 일본 국내의 민간자격으로 2년마다 자격 갱신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야 하는 신뢰할만한 재무설계전문가라 할 수 있음
 - AFP는 국가자격인 재무설계기능사와 연계되어 있어 2급 재무설계기능사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AFP 인증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이 주어짐
 - CFP자격은 전세계 24개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공인 재무설계 민간자격으로 세계 수준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고급 자격으로 2년마다 자격갱신에 소정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
 - 일본FP협회의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인증자나 일본FP협회 CFP 자격 심사 합격자는 재무설계기능사 1급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1급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싱가포르 - 금융자문업 현황

- 싱가포르 금융소비자들은 주로 자문서비스를 통해 투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자문업자는 크게 LFAs(Licensed Financial Advisers)와 EFAs(Exempt Financial Advisers)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싱가포르 금융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면허를 받아야 함
- LFA는 Financial Advisers Act에 의해 MAS의 규제 대상이며, EFA는 LFA와 동일한 기준으로 금융자문업무를 영위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 받음
 -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LFA의 임직원도 관련 면허 소지 의무가 있으며, EFA의 임직원에게는 동 의무가 없음

싱가포르 -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 싱가포르는 1974년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비영리기구인 IBF(Institute of Banking and Finance)를 설립
 - IBF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중개회사 및 자산운용사 등 200여 개 금융기관을 망라하는 금융산업협회로서 금융산업, 정부기관, 훈련제공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금융분야의 다양한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인증교육기관
 - IBF의 자격시험은 크게 네 가지(CMFAS, CACS, CBCE, FMRP)로 구분. 이 중 재무설계 및 금융자문과 관련된 자격은 CACS와 CMFAS임
 - CACS(Client Advisor Competency Standards)는 싱가포르에서 고소득 개인고객 대상 대면 재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PB(private banking) 전문가가 취득해야 하는 전문자격
 - CMFAS(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는 싱가포르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이 취득해야 하는 전문자격

소결

- 수수료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 문제를 근절하고 자문서비스 제공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음
- 자문업자의 질과 자격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이상 교육 수준과 지속 교육을 요구하고 있음
 - 주요국은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자문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연간 지속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추세
 -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자문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 등과 같은 전문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함

소결(cont.)

-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자문업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허용하고 있음
 - 국내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대신에 법인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사실상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업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금융위원회, 2015)
- 싱가포르의 경우, 다양한 금융업권을 포함하는 국가공인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자격기준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격시험을 시행
 - 우리나라와 같이 업권별 자격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싱가포르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자문업 및 자본시장법 상 금융자문업의 경우, 업권별 자격시험제도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 즉, 금융자문업은 특정 업권의 지식 외에도 다양한 업권의 지식을 망라하는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므로 모든 업권을 포괄하는 전문교육기관 및 자격조정기구가 절실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연계 및 발전방안

1. 개인재무설계분야 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

- 금융부문의 선진화는 실물부문의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실물부문의 발전이 금융부문의 추가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구조의 선순환 확립에 필요
- 최근 금융산업은 지적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 거시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계금융자산에 대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2005년 약 14.0%, 2010년 약 21.4%, 2018년 약 25.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연금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대한 FP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

1. 개인재무설계분야 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확산에 따른 FP들의 대면서비스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hybrid-type)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 미국의 투자은행 Merrill Lynch는 2017년부터 Hybrid Digital-Human Advice Platform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설계 분야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 하나임
- 한국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계 및 개인의 재무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점점

2. 해외 사례의 국내자격제도 적용방안

-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내용 비교 1
 - CFP는 영국의 QCT, 호주의 AFSL/NCFS,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AFP와 가장 유사함
 - 영국의 QCT와 비교하면, 재무설계원론과 재무설계 직업윤리,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은퇴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등의 내용이 유사하며 차이점은 CFP에는 부동산설계가 있는데 영국의 QCT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없음
 - 호주의 AFSL/NCFS와 비교하면 AFSL은 금융상품 자문과 관련된 지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NCFS에는 규제와 행위준칙,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필수과목으로, 투자/보험/부동산 자문 내용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내용 비교 2

-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AFP와 비교한 결과, CFP와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시험이 따로 있고, 자격등급을 영역별로 1, 2, 3급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미국의 Series 65는 투자설계와 법률적 내용에 치우쳐져 있으며, 싱가포르의 CACS/CMFAS 역시 법규와 금융산업 및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과 비교할 때, CFP에서 보완할 점은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임
 - 영국의 재무설계 실무, 일본의 실기시험, 호주의 금융자문 실무

•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응시자격 비교

- 일본의 자격 제도와 가장 유사함
-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은 1, 2, 3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3급은 제한이 없으나 1급과 2급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급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일본의 AFP 역시 인증교육과 2급 재무설계 시험을 합격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짐
- 미국의 Series 65와 싱가포르의 CACS와 CMFAS는 모두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영국의 QCT와 호주의 AFSL/NCFS는 이전등급 시험 합격 조건은 없고,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수료한 경우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음

2. 해외 사례의 국내자격제도 적용방안

•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취득 후 담당업무 비교

- 재무설계서비스 또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CFP	미국 : Series 65	영국 : QCT (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재무설계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 제공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호주	일본	싱가포르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재무설계 기능검정	CACS (Client Adviser Competency Standards)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고객의 정보 분석을 통해 라이프 플랜 수립 및 조언	고소득 개인고객 대상 대면 재무자문서비스 제공
NCFS (National Certificate in Financial Services)	AFP	CMFAS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자산 설계, 자금 계획 제안 및 조언	자본시장 및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2. 해외 사례의 국내자격제도 적용방안

•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인증유지 조건 비교

- 시기와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Series 65, 영국의 QCT, 호주의 AFSL, 일본의 AFP, 싱가포르의 CACS와 CMFAS는 계속 교육 조건이 있음
 - CFP 뿐만 아니라 일본의 AFP와 영국의 QCT, 싱가포르의 CACS와 CMFAS는 구체적인 계속 교육 시기와 시간을 정해 놓았으나 미국의 Series 65와 호주의 AFSL은 계속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음
- 반면, 호주의 NCFS와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은 자격증 인증 유지를 위한 특별한 조건이 없음

3.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연계방안

- CFP/AFP와 타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와의 연계 필요 1

-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적격성 심사)과 한국FPSB가 인증하는 CFP/AFP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금융종사자의 자격증 시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 미국은 유효한 CFP 자격 인증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문사 자격시험인 Series 65가 면제됨
 - 일본에서도 노동후생성이 주관하는 재무설계 기능사 자격이 일본FP협회가 주관하는 CFP자격 및 AFP자격과 각각 연계되어 있음
-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투자와 관련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 CFP/AFP 자격자의 종합재무설계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연계방안

- CFP/AFP와 타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와의 연계 필요 2

- CFP/AFP 자격자들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취득을 활성화시키면 재무설계 접근방법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존 국내 자격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검정하고 있는 CFP, CFA 등의 국제인증자격의 경우,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문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CFP/AFPK 자격증과 타 금융전문인력 자격과의 연계 현황

– CFP/AFPK 자격취득 후 계속 교육과정 면제

- AFPK 교육 과정 전체 면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경영학 석사, 경제학 석사, 재무설계학 석사
- AFPK 교육 과정 중 일부 과목 면제
 - 투자자산운용사, 종합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면제
 - 펀드 투자권유전문인력, 증권 투자권유전문인력, 파생상품 투자권유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설계 면제
 -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보험설계 면제
 - 공인중개사: 부동산설계 면제
- CFP 교육 과정 전체 면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CFA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간 연계 현황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증 간에는 일부 시험과목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자격증	시험과목 면제 내용
펀드 투자권유대행인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 자격자는 펀드투자, 투자권유 과목 면제
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 자격자는 펀드투자 과목 면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 면제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자는 부동산펀드 과목 면제
투자자산운용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 자격자는 금융상품및세제, 직무유리및법규/ 투자운용및전략Ⅰ 과목 면제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자는 투자운용및전략Ⅱ/ 투자분석, 직무유리및법규/ 투자운용및전략Ⅰ 과목 면제

•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관련 자격증과 CFP/AFP의 연계 1

– 재무설계사(AFPK)와 자산관리사(FP) 자격증의 연계

- 현행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에서 교육 일부 과정(모듈2) 면제 자격에 자산관리사(FP)가 해당 됨.
- 또한 재무설계사(AFPK)와 자산관리사(FP) 시험과목은 상속 설계와 재무설계 직업윤리과목을 제외하고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자산관리사(FP)의 경우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함양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재무설계사(AFPK) 교육 일부 과정(모듈1) 면제를 추가하여 응시자격을 완화
- 이로 인해 재무설계사(AFPK)와 자산관리(FP) 자격증 간의 연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 자격증 시험과목 비교

국제통용자격		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등록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한국 FPSB				한국금융연수원	손해/생명 보험협회 (공동관리기관)
지식형	재무설계원론	모듈1	재무설계개론	자산관리 기본지식	파이낸셜플래닝
	재무설계 직업윤리		재무설계 직업윤리		
	부동산설계		부동산설계	비금융자산 투자설계	부동산 운용설계
	상속설계		상속설계		
	은퇴설계		은퇴설계	보험 및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모듈2	투자설계	금융자산 투자설계	금융자산 운용설계
	세금설계		세금설계	세무설계	세무설계
사례형	단일사례				
	복합사례				
	종합사례				

-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관련 자격증과 CFP/AFPK 연계 2**

-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증의 연계

-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는 모두 자격 취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계속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함
- 하지만 3개의 자격증 중 2개 이상의 중복 자격자의 경우 계속 교육 또는 보수교육의 중복 실시의 번거로움 발생
- 이에 3개의 자격증 중 짧은 자격인증유효기간을 채택하여 계속 교육 또는 보수교육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격취득자의 부담을 줄임

- **금융투자관련 자격증과 CFP/AFPK 연계 1**

- 투자권유대행인과 재무설계(AFPK) 자격증의 연계

- 기존의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 교육 일부 과정 면제 자격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속하지 않음
-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의 경우, 투자상품(증권, 펀드 등)과 관련된 기본 지시 및 법률, 직무윤리를 평가하며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의 투자설계 시험과목과 관련 내용이 유사함
- 이에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취득 시 재무설계사(AFPK) 교육 일부 과정(투자설계) 면제 자격을 부여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과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의 연계성을 향상

- 금융투자관련 자격증과 CFP/AFPK 연계 2

- 투자권유자문인력과 CFP 자격증의 연계

- CFP 자격 인증자의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취득 시 계속교육학점이 인정
- 하지만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보수 교육 또는 계속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취득자의 전문성 제고와 유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후 보수교육 또는 계속 교육이 의무화 된다면 CFP 자격증 또한 계속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연계 될 수 있음

4. 국가직무표준(NCS)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연계방안

- CFP/AFPK 등 금융자문업 전문인력 관련 자격제도가 NCS 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NCS는 국가에서 체계화하여 표준화한 직무로 산업체에서 NCS기반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자문업 전문인력 관련 자격제도가 NCS 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등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 NCS에 종합재무설계 등 금융자문업과 관련된 세분류 추가가 필요함
 - PB영업을 구성하는 능력단위들은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재무설계 영역 및 프로세스와 거의 동일함에 따라 NCS에 종합재무설계 등 금융자문업과 관련된 세분류 추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이미 포함되어 있는 PB영업과의 중복성 배제와 고유성 인정을 위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됨

4. 국가직무표준(NCS)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연계방안

- CFP를 해외의 사례와 같이 국제공인 자격으로 인정하여 CFP 자격인증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능력단위별로 관련자격사항에 등록민간자격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능력단위에 CFP가 명시되어 있음
 - 이는 PB영업 직무가 CFP 직무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CFP가 NCS 직무 정의에 제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를 가진 고객”이 아닌 일반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설계 직무가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음

5.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발전방향

- 관련 법규의 정비 1
 - 전문금융업으로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를 법으로 정의하고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호칭 사용의 법적 규제 필요
 - 호주는 2016년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개정으로 Financial Planner 호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했음
 -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도 Financial Planner 호칭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 관련 법규의 정비 2

- 2012년 7월에 최초로 발의되어 2016년 6월 20대 국회에 재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동 법안에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엄격히 제한하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CFP/AFP 자격자들을 포함시킬 필요
 - 법인에 국한된 금융상품자문업자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겸영금지 및 커미션 수취 금지 등 독립성 요건 조항은 독립된 자문업자가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 관련 법규의 정비 3

- 금융거래와 관련된 민원, 분쟁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를 공개하고, 각종 사고로 금융행위의 영위가 금지된 자연인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위반자, 금융관련 종사부적격자, 금융사기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시
 - 미국의 FINRA는 매월 발간되는 “Disciplinary and Other FINRA Actions”를 통해 금융규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반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징계 및 제재 결과를 실명으로 공시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개인재무설계제도의효율성제고와신뢰할수있는재무설계서비스의저변확대1
 -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서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 서비스의 기여정도를 재평가하고, 역할을 제고할 필요 있음
 - 금융시장 환경 및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화된 신뢰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은 중요한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어 매우 시급
 - 고령사회(aged-society)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가계의 은퇴준비 부족, 가계부채 문제, 생산력 저하, 은퇴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 및 책임 증가, 세계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재무건전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

- 금융시장에서개인재무설계제도의효율성제고와신뢰할수있는재무설계서비스의저변확대2
 -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한 가계 및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역할 제고
 - 일반 개인과 가계도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자문서비스 및 재무설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저변을 확충하는 효과 기대
 - 효율적인 개인재무설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생활수준의 질적, 양적 향상과 더 나아가서는 가계 재무건전성 확보와 적절한 은퇴 준비가 가능할 수 있음
 - 전문적인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확대 및 대중화로 인해 개인과 가계의 금융역량이 증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시장에서 개인재무설계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서비스의 저변 확대3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 포함된 금융상품자문업에서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역할 제고
 -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자문 또한 개인재무설계의 중요성,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윤리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 재무설계서비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금융시장에서 개인재무설계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서비스의 저변 확대4
 - 금융시장에서 활용가능한 개인재무설계 자격증의 중요성 부각
 - 재무설계는 가계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임
 -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틀 안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재무설계 전문자격자 양성과 그 역할의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함
 - 금융시장과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재무설계자격증의 인증 범위와 적용 범위 확대

-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통합 관리 필요

-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함
- “(가칭) 금융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통합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감독당국(호주 ASIC) 또는 민관합동기구(영국 FSP, 뉴질랜드 NZQA와 ETITO 공동 관장)가 자격에 요구되는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을 충족시키는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
 -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및 자산운용회사 등의 금융 관련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인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자격기준 제공 및 자격시험 시행

금융자문업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재무설계전문자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THANKYOU